

① 비자 소지 형태

구 분	참여 범위 및 가능여부
전문취업비자 (E1 ~ E7)	✓ 참여 불가 - 전문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, 관련 분야 해당 부처로부터 사전 전문성에 대한 승인 등을 득한 후 취업비자가 발급 되므로 -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분야에서 상당 수준을 가진 전문가로 별도로 일학습병행제를 통한 교육훈련 불필요
비전문취업비자 (E9, E10, H2)	✓ 참여 불가 - 사업주훈련에서는 E9비자 소지자가 고용 보험에 가입된 경우 사업주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나 -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이 있어 사업주훈련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. - E9와 H2 비자 소지자의 경우 단기체류(최장 5년)와 비전문인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* 동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법·제도적 노력과 충돌할 수 있음. * E10(외국인 선원)은 일학습병행제 참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.
단기취업비자 (C4, H1)	✓ 참여 불가 - 90일 이내 단기취업비자로 일학습병행제 참여 불가

② 체류 형태

- 취업이 허용되는 영주권자(F5), 재외동포(F4), 다문화 가정 배후자(결혼 이민자 : F6)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에 준하므로,
  -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로 참여 허용
- \* 단, F로 시작되는 비자 중 거주(F2) 비자 소지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 불가